
외국인이 부재지주인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현지인 또는 부재지주로 보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인접 시·구·읍·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이라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9.1.7. 토지정책과-127]